

● 제29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712)

2020. 09. 0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1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외 22명)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나 권익옹호가 등록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장애등록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정신장애인 등록은 10만 3천명 수준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등록 장애인이 3배는 더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 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근거에 미흡한 경우 등록 장애인이 될 수 없음. 이에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장애가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됨. 예를 들어 몇 년 전 발생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학대 사건 피해자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장애인이었음.

- 그러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의 등록 장애인 위주의 구제 경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 3. 주요내용

-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인권증진 대상에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하여

-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서도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음.

1)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본 조례가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sup>2)</sup>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세부운영기준」<sup>3)</sup>에는 미등록 장애인도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으며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교체된 매니저에게서도 또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현 매니저를 사기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음.<sup>4)</sup>

2)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2018.7월 개정)

3)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료출처 : ‘유진박, 새 매니저에도 억대 착취당해’ 경향신문 기사 2019. 6. 10.

## 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

- 금번 조례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5)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은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도 포괄하여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권리구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수탁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 중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5)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증진 대상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될 여지는 없음.
-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